

| 개정 전   | 개정 후   |
|--|--|
| <p><u>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·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</u></p> <p><u>⑥ · ⑦ 삭 제</u></p> <p><u>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(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)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⑨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,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28조제2항 · 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 | <p><u>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u></p> <p><u>다.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.</u></p> <p><u>⑤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(이하 "산업단지등"이라 한다)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.</u></p> <p><u>1. 대상 지역</u></p> <p>가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</p> <p>나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치지역</p> <p>다.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</p> <p><u>2. 경감 내용</u></p> <p>가.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(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</p> |